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500억 달러 한미 전략투자의 법적 기반 마련 -

2026년 3월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본 법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대미 직접투자 2,000억 달러 및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재원·국회 통제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반도체·에너지·AI·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본 법의 시행으로 거래 구조와 투자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배경과 핵심 조문을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하게 될 법적 쟁점과 리스크·기회 요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 및 개관
2. 법안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및 개관

대미투자특별법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미투자(2,000억 달러) 및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① 투자 거버넌스 구조 확립, ② 전담 실행 기관 설립 근거 마련, ③ 재원 조달 체계 정비, ④ 국회 통제 장치를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본 법의 제도 설계는 대규모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재정·외환·통상·산업정책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별도의 법인·기금 구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절충형 모델'**을 취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① **중층 의사결정**: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가 상업적 합리성 등을 1차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가 투자 추진의사를 최종 의결하는 2단계 심사 체계입니다.

- ② **국회 사전동의:** 국가안보·공급망 등 예외 사유로 인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③ **국회 사전보고:** 운영위원회 추진의사 의결 후 미측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본 법은 전략적 투자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두 가지 전담 기구—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전략적투자"의 개념·분류 및 "상업적 합리성" 등 투자 기본원칙 정의. 법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의 명확화
제3조 제3항 (국회 사전동의)	국가안보·공급망 등 예외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 필요
제5조~제15조 (추진체계)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가 상업적 합리성 등 1차 검토 →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가 투자 추진의사를 최종 의결하는 중층 구조
제16조~제39조 (투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자본금 2조 원(정부 출자). 전략적 투자 전담 집행기구
제40조~제44조 (투자기금)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재원: 출연금·위탁자산·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등. 기금을 통한 대출·보증 및 공동투자 지원.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계정 별도 관리
제51조 (국회 사전보고)	운영위원회 추진의사 의결 후 미측 협의 개시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의무

- 1) **전략적 투자의 정의 및 상업적 합리성(제2조):**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재무모형, 기대수익률, 손실한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하위법령 제정 전까지는 법 적용 범위의 불확실성이 잔존합니다.
- 2) **국회 사전동의(제3조 제3항):** 비상업적 투자로 분류될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될 타임라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형 판단이 중요합니다.
- 3) **추진체계(제5조~제15조):**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2단계 심사 구조로 인해, 기업은 상업적 합리성 자료 패키지(재무·법무·통상·제재·수출통제 포함) 및 설명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 4) **투자공사(제16조~제39조):** 공사가 투자자·대주·보증기관으로 거래에 등장함에 따라, 공사와의 공동투자·대출·보증·용역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 구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5) **투자기금(제40조~제44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금조달 구조에 따라 금리 및 환율 변동 관련 리스크의 배분 방식이 향후 계약 구조 설계 시 주요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6) **국회 사전보고(제51조):** 미측 협의 개시 일정이 국회 보고 절차와 연동되므로, 협상 일정 수립 시 국회 보고 소요기간을 선행 변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시사점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단순히 한미 양해각서(MOU)의 후속 입법이라는 의미를 넘어, 향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공급망 재편, 조선-방산 협력, 첨단산업 진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축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 거래 안정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들은 향후 미국의 품목별 관세, 원산지 기준, 보조금 정책, 공급망 요건 변화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선-방산 및 연관 공급망 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조선협력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한 기금-공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유지-보수정비(MRO), 기자재 공급, 금융지원, 현지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한국 기업이 **미국 산업정책의 파트너**로 편입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반면, 현지 생산, 정부조달, 노동규제, 안보심사, 투자심사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경우 실질적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게는 “대미 투자 확대” 그 자체보다 어떤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선택되고 승인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상 투자 집행은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 가치, 법적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반도체, AI, 에너지, 바이오, 핵심광물, 첨단소재 등 관련 기업들은 **미국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현지 고용창출 효과, 공급망 안정 기여도,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회를 주는 장치라기보다, 준비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가는 선별적 플랫폼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향후 **사업구조 설계와 규제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해외투자 신고, 외국환거래 규제, 공정거래 이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보호, 수출통제, 정부조달 규정, 현지 법인 구조 및 계약체계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 심사와 국내 규제 준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투자 검토 초기부터 통상-규제-금융-계약 이슈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거시경제 및 정책금융 측면의 리스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별법은 투자기금 조성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외환시장 영향, 정책금융기관 자원 배분, 국내 산업 지원 여력 저하 등 부작용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전략산업 또는 특정 대미 프로젝트에 집중될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나 비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지원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 조건과 지원 우선순위,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이번 특별법은 기업 실무상 “정책 해석”의 단계에서 “프로젝트 선점”의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미 투자 또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자사 사업이 특별법상 전략적 투자 또는 조선협력투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상업적 합리성과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미국 측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안보-공급망-통상 이슈가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는 단순한 선언적 지원정책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협상력에 따라 실질적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업별 준비 정도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통상산업 전략에 대응하여 관세, 투자, 조선, 안보 협력을 하나의 제도적 패키지로 연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기업들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및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와 현지 사업 재편, 공급망 재구축, 정책금융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실질적인 관건은 법 통과 자체보다도, 하위 제도 설계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정책 일관성, 외환 안정, 산업 환류 효과가 얼마나 균형 있게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정동원

T. (+82) 2 6182 8134

파트너변호사

E. dwjung@yoonyang.com

최종문

T. (+82) 2 6003 7051

고문

E. imchoi@yoonyang.com

박진규

T. (+82) 2 6003 7530

고문

E. jpark66@yoonyang.com

장정주

T. (+82) 2 6182 8135

파트너변호사

E. jjjahng@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박연경

T. (+82) 2 6003 7053

변호사

E. pyk@yoonyang.com